

<경력개발센터 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기준>

※ 본 지원금 지급기준안은 2024년 09월 10일 이후 지원금 신청자부터 적용함

작성일: 2024.9.10.

1. 인턴십 지원금 신청 대상, 인정 기관

- 신청대상 : 최소 4주 이상 Full-Time해외인턴십이 확정된 서울대학교 재학생(학부생)

- ※ 대학원생, 연구생, 휴학생, 방문학생, 교환학생, 학점교류학생 신청 불가
- ※ 직전 학기 및 전체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Full-Time 인턴십 근무: 인턴십 근무 기관의 규칙(계약서 명시) 또는 근무하는 국가의 노동법에 따름

- 인턴십 인정 기관 및 기업

- ※ 기관(현지 정부기관 등)(단, 해외 주재 한국 정부 기관은 신청 불가)
- ※ 국제기구(단, 외교부 국제기구 리스트에 준하여 인정함)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un.jsp>)
- ※ 국제기구의 경우, 외교부 국제기구 리스트에 준하여 인정함
- ※ Research Assistant 등 연구 목적의 해외 파견은 지원 제외

2. 특이사례 처리기준

구분	내용	처리기준
인턴십 기관	교육부 WEST 워싱턴센터 외교부 중남미지역기구 인턴	인턴십 인정 기관(해외법인기업 및 국제기구) 이외의 경우에는, 무급 혹은 유급, 타기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결정 - WEST, 워싱턴센터: 150만원 - 외교부 중남미지역기구 인턴 : 인턴십 지역별 차등지급 기준에 준함
인턴십 신청시 신분	지원금 신청시에는 재학생이나, 졸업 후 인턴시작	지원 불가
	신청시에는 재학생이나, 인턴 후 귀국 시 졸업생 신분	신청 시점시 재학생일 경우 가능
인턴십 신청시점	인턴십 종료 후 사후 신청	지원 불가
	현지에서 인턴십 연계로 인한 인터뷰 미실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경우에 따라 조정

※ 이 외 예외사항 신청 시, 전문위원 및 행정실장 의견을 따라 진행하도록 함.

※ 지원금 규모는 지원금 상한선 내에서 인터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인턴십 출국 3주 전까지 제출 서류(아래 4. 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경력개발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주소: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152-1동 202호)

2) 서류 심사 통과 후 면접 진행 (비대면)

3) 면접 심사 통과 후 1차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출국 및 인턴십 근무 시작

※ 해외 도착 후 14일 내 체재지 도착 신고서 제출

5) 인턴십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턴십 활동 보고서 제출

※ 경력개발센터 결과보고서 소정 양식 활용, 인턴십 기간 연장 시 반드시 사전 연락 및 협의 필요함. 미준수 시 선금 환수 및 잔금 지급 예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턴십 활동을 위해 사용한 왕복 항공권 보딩패스를 증빙을 위해 함께 제출

6) 보고서 심사 통과 후 2차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 구비서류

1) 해외인턴십 지원금 신청서 (소정양식)

2) 해외인턴십 지원금 지도교수 추천서 (소정양식)

3) 해외인턴십 지원 활동서약서 (소정양식)

4) 해외인턴십 활동계획서 (소정양식)

5)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자유양식)

6) 성적증명서

7) 외국어능력증명서 (토익, 토플, 텡스, HSK, JPT 등)

8) 인턴십 합격 증명서, Offer letter

9)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10) 항공권예매서 (e-ticket)

11) 해외 체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증명서

12)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5. 지원금(지역별 차등지급)

지역	세부지역	지원금 상한선
미주		1,500,000원
유럽		1,500,000원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본토	500,000원
기타 아시아	홍콩,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700,000원
	인도, 인도네시아	900,000원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1,300,000원
중동		1,000,000원
아프리카		1,500,000원

※ 지원금 규모는 지원금 상한선 내에서 인터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상한선 적용 예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상한선의 50% 추가지급 고려가능(증빙서류 제출시 한함)